

대 통령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령 박근혜 인

2015년 5월 12일

국무총리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황교안

● 대통령령 제26236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)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30억 원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2892호, 2014. 12. 30. 공포, 2015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인

2015년 5월 12일

국무총리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장 정종섭

● 대통령령 제26237호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